



금융감독원

보도자료



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6.10.29.(목) 16:00	배포	2026.10.29.(목)		
담당부서	계리리스크감독국 계리리스크총괄팀 계리감독팀 계리감리팀	책임자	국 장	주요한	(02-3145-7240)
		담당자	팀 장	박정현	(02-3145-7242)
			팀 장	현은하	(02-3145-7245)
			팀 장	강수원	(02-3145-7250)

보험회사 계리담당 부서장 간담회 개최

1 간담회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'26.10.29.(목) 생·손보협회,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「보험회사 계리담당 부서장 간담회」를 개최하였음
- 금융감독당국은 손해율·사업비 등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합리적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한 바 있으며*,
 - * '26.1.20. 「계리감독 선진화 방안」, '26.6.30. 「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시행」 보도자료 참고
 - 동 간담회는 개정된 기준이 실무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음
 - 아울러 계리가정보고서 및 계리감리 상시감시지표 등 향후 시행될 주요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체계적인 계리가정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였음

간담회 개요

- ☑ 일 시 : '26. 10. 29.(목) 16:00~17:00
- ☑ 장 소 :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세미나실(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 3층)
- ☑ 참석자 : (금 감 원) 계리리스크감독국 담당 팀장
(유관기관)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, 보험개발원
(보험회사) 생명(22개사)·손해보험회사(17개사) 계리담당 부서장 등
(회계법인) 주요 회계법인 보험부채 회계감사 담당자

1. 계리가정 현장점검 주요 사례 공유

- ◆ '26.9월중 금감원 계리감리팀은 6개사(생·손보 각 3사) 대상으로 최근 계리가정 제도개선 사항(→ 주요내용 : 참고)의 이행상황 확인 등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
- ◆ 현장점검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례 등을 금번 부서장 간담회에서 공유

가. 손해율 가정 산출 미흡사례

- (산출단위 세분화) 손해율 가정 산출시, 하위 세부담보의 위험수준이 통계적 충분성·유의성* 요건에 충족됨에도 산출단위를 하위담보 수준으로 세분화하지 않은 사례

* 충분성 : 신뢰성 있는 손해율 산출을 위해 충분한 경험통계가 확보되었는지 여부
 유의성 : 산출단위 간 손해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여부

⇒ (권고사항) 통계적 충분성·유의성을 충족시 산출단위를 세분화

- (최종손해율* 적용시점) 적용시점을 전체 담보기준으로 판단하여 세부 담보별 통계량을 반영한 확장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

* 통계 부족 등을 감안하여 일정 경과기간 이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는 단일 손해율

⇒ (권고사항) 세부 담보별 통계량 집적 등을 반영하여 최종손해율 적용시점이 합리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판단 프로세스를 보완

- (갱신형상품 수령기간) 손실계약의 목표손해율*(100%) 수령기간을 일괄 10년으로 설정하여 보험료 조정률로 달성이 불가능**한 경우 발생

* 갱신보험료 조정 등을 통해 일정기간 후 도달(수령)해야 하는 손해율 수준

** 예) 보험료 조정률 감안시 13년 후 100% 달성이 가능함에도 수령기간을 10년으로 설정

⇒ (권고사항) 손실계약의 목표손해율 수령기간 설정시 갱신시점 및 보험료 조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 기간을 설정

- (신규담보 경험통계 반영 기준) 신규담보의 통계가 3년 이상 집적되었음에도 경직적인 내부 기준으로 인해 경험손해율 반영이 미흡

⇒ (권고사항) 신규담보의 경험손해율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기준 개선

나. 사업비 가정 산출 미흡사례

- (계약체결비* 물가 적용) 단기간내 비용으로 인식(결산기준 1년 이내) 된다는 이유로 계약체결비 전체를 물가상승률 적용대상에서 제외

* 신계약의 판매, 심사, 개시부서의 인건비 등 신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된 비용

⇒ (권고사항) 계약체결비로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정과목 성격 등을 고려하여 물가상승률 적용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

- (물가상승률 미반영 근거) 계정과목별 정량평가 없이 지급상한 내규, 수수료 동결 등만을 이유로 물가상승률 미적용(복리후생비, 수수료 등)

⇒ (권고사항) 물가상승률 미적용시 계정별 정량분석*을 실시·보완

* 예) 과거 일정기간 동안 원가동인당 사업비 발생액의 지속 증가 여부 등을 평가

- (공통비 배부기준) 공통비* 배부기준으로 배부대상 팀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표**를 사용중이나, 일부 지표 비율이 매년 크게 변동

* 공통부서(인사·IT) 인건비 등 지출목적이 불분명한 비용 → 계약체결비/유지비 등으로 배분

** 인원수뿐 아니라 문서수발신, 전산처리요청건수, 감사대상부서 등 다양한 지표를 사용

⇒ (권고사항) 공통비 배부기준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준 보완*

* 예) N년간의 평균치 사용, 안정적인 타 비율로 대체 등

- (계약체결비 분류방법) 공통비 중 인건비에 대해 설문조사와 유사한 방식을 통해 산정한 부서별 활동비율을 적용하여 계약체결비 분류

⇒ (권고사항) 시행세칙은 공통비의 계약체결비 분류시 설문조사 방법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, 사용방식을 개선·변경

- (단일 원가동인*) 일부 세금과공과 항목에 대해 법정 산식, 지출특성 고려 없이 단일 원가동인(수입보험료)을 적용하고, 입증 문서화도 미흡

* 원가동인 : 비용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, 사업비 배분·추정 기준이 되는 요소

⇒ (권고사항) 지출이 보험료만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보유계약건수 등을 포함한 복합 원가동인을 설정

2. 계리가정보고서 및 계리감리 상시감시지표 도입 안내

◆ '26.12월말부터 **규정화되는 계리가정보고서** 및 **보험회사 계리가정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계리감리 상시감시지표**에 대해 설명

□ (계리가정보고서) 보험업감독규정·시행세칙 개정 절차가 진행중으로, '26.12월말부터 **계리가정보고서***가 공식 시행(규정화)될 예정

* 계리가정 체계, 계리가정 산출기준·결과, 현금흐름 모델, 내부통제 등을 설명하는 보고서

○ 보고서 산출과 관련한 **내부통제 체계**를 수립·점검하여 보고내용의 **정확성과 충실성**을 확보하고 **제출기한이 준수**되도록 관리할 필요

※ 법규상 제출이 의무화된 보고서의 허위 작성 또는 제출기한 미준수시 제재가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

□ (계리감리 상시감시지표) 회사별 계리가정 관리 수준을 **양적 지표**로 측정, 감시할 수 있는 **상시감시지표**를 마련, 운영할 예정

○ (개요) BEL^{최선추정부채}·CSM^{보험계약마진} **요인별 변동, 예실차 관리 지표*** 등 1차안을 마련하였으며, 업계 의견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

* 상시감시지표는 3개 부문^{①계리적 가정의 적정성, ②예실차 관리의 적정성, ③CSM 관리의 적정성}으로 크게 구분하고, 부문 내 3~5개의 지표로 구성

○ (활용) 정기적인 등급산출을 통한 원인분석·조치 수행, 수시감리를 위한 테마·대상회사 선정, 감리 착안사항 발굴 등에 활용

[※ 참고 : BEL·CSM 요인별 변동과 상시감시지표 간 관계]

① (계리적 가정의 적정성) 손해율·해지율·사업비율 등 계리적 가정 변동에 따른 BEL 변동률을 측정 → 가정 변경에 따른 BEL 변동의 특이성을 측정

② (예실차 관리의 적정성) 보험금·사업비 등 당기 예상 현금흐름과 실제 현금흐름간 괴리율의 정도를 측정 → 가정 관리의 부적정 요인 탐지

③ (CSM 관리의 적정성) 경험조정 요인별 CSM 조정비율, 전체 CSM의 안정적 관리역량* 등을 지표로 설정 → 가정 관리의 부적정 요인 탐지

* 신계약 CSM 대비 CSM 조정, CSM 상각 대비 CSM 조정

3

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간담회에서 공유한 주요 감리 사례를 바탕으로 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*하고 계리가정 적용의 적정성·합리성 제고

* 간담회에서 공유한 현장점검 미흡사례를 바탕으로 쏘보험사가 자체점검 실시후 11월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안내(현장점검 대상사는 경영진 면담 既 실시)

- 실무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, 회사 간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
- 계리감리 상시감시지표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(→ 최종안 확정시 별도 안내)
- 계리가정보고서 최종 양식*을 배포하여, 회사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'26.12월말 기준 보고서 작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

* '26.상반기중 Pilot-test를 실시하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보고서 양식 확정

- 금융감독원은 '26년 결산시 보험회사가 「계리감독 선진화 방안」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보험부채 평가에 반영하였는지 집중 점검하고,

- 보험부채를 부적절하게 산출하였거나 오류가 확인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집중감리·검사 등을 통해 필요시 엄정한 제재조치 부과
- 보험회사의 애로·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업계와 지속 소통할 예정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참고

시행세칙 개정안*('26.6.30. 시행) 주요내용

※ 「계리감독 선진화 방안」('26.1.20.) 이행 등을 위한 「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개정안

1 손해율 가정 산출기준 개선

- **(산출단위 세분화)** 위험 속성(성별·직업·고지사항 등)별 구분·산출에 필요한 통계적 충분성·유의성 확보시 가정 산출단위를 세분화
- **(최종손해율 가정 산출 개선)** 실제 통계량을 기반으로 최종손해율 적용시점의 확장 여부를 검토·결정하고, 최종손해율 산출시 현행 추정부채의 증가효과를 축소·이연·제한하는 행위* 등을 금지
 - * 범위·한도 설정, 평활화(smoothing), 전문가 판단 또는 유사한 방법의 이용 등
- **(보험료갱신 가정)** 비실손 갱신형 보험상품의 장래 갱신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방법(목표손해율 설정, 수렴방법 등)을 제시
- **(신규담보에 대한 보수적 가정 적용)** 신규 판매 또는 통계가 불충분한 위험담보에 대한 손해율가정 적용 기준(보수적 가정)을 명시

2 사업비 가정 산출기준 개선

- **(물가상승률 반영)** 사업비 세부 계정과목(예: 인건비 등)이 물가의 영향을 받는 경우 물가상승(원칙 2%)을 반영하되, 예외사항을 명시
- **(원가동인 설정 원칙)** 유지비의 원가동인은 원칙적으로 비용이 보험기간 발생하도록 설정 → 단일 또는 복합원가동인으로 설정 가능
- **(사업비 분류기준 명확화)** 사업비를 직접비·공통비*로 구분하고, 가정 산출단위(계약체결비·유지비·손해조사비·투자관리비)별 분류기준을 제시
 - * (직접비) 지출 목적이 분명, (공통비) 지출 목적이 불분명(예: 공통부서 인건비 등)

3 경험통계기간 적용기준 개선

- 계리적 가정 산출에 사용하는 경험통계기간을 매 회계연도에 일관되게 적용하고, 경험통계기간의 변경 또는 배제 요건을 명시